

아시아

대만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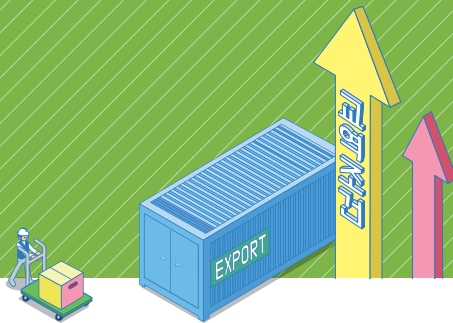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96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11
03. 비관세장벽 현황	114
04. 수출 애로사항	126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28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대만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2)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480억 달러(한화 약 62조 8,800억 원)로 전년 대비 3.4%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94억 달러(한화 약 25조 4,140억 원)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40.4%를 차지함
 - * 채소류 및 낙농품 시장규모가 각 58억 달러(한화 약 7조 5,980억 원)로 전체 시장의 12.1%를 차지하며, 두 품목이 신선식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86억 달러(한화 약 37조 4,660억 원)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59.6%를 차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20.4%) 차지하며, 전년 대비 2.1% 증가함. 뒤이어 스낵류(11.3%), 편의식품(11.3%), 스프레드 및 당류(10.8%) 순임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39.7	39.6	42.5	46.4	48.0	100.0	3.4
신선식품	15.8	15.8	16.9	18.5	19.4	40.4	4.9
- 채소류	4.9	4.8	5.1	5.6	5.8	12.1	3.6
- 낙농품	4.7	4.7	5.0	5.5	5.8	12.1	5.5
- 과일 및 견과류	3.5	3.5	3.7	4.0	4.2	8.8	5.0
- 육류	2.0	2.1	2.3	2.6	2.8	5.8	7.7
- 유제품	0.7	0.7	0.8	0.8	0.8	1.7	0.0
가공식품	23.9	23.8	25.6	27.9	28.6	59.6	2.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8.4	8.3	8.8	9.6	9.8	20.4	2.1
- 스낵류	4.3	4.3	4.8	5.3	5.4	11.3	1.9
- 편의식품	4.3	4.4	4.7	5.1	5.4	11.3	5.9
- 스프레드 및 당류	4.5	4.4	4.7	5.1	5.2	10.8	2.0
- 소스 및 향신료	1.4	1.4	1.4	1.6	1.6	3.3	0.0
- 펫푸드	0.6	0.6	0.7	0.7	0.7	1.5	0.0
- 영유아용 식품	0.4	0.4	0.5	0.5	0.5	1.0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2,389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성비가 균등함
 - 연령대별 인구 수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35.7% 비중으로 높으며, 24세 이하 인구 비중이 18.7%로 낮은 편임
 - 여성 인구 수는 약 1,207만 명(약 50.5%), 남성 인구수는 약 1,183만 명(49.5%)으로 성비가 균등함
 - 2022년 전체 가구 수는 808만 가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2022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017.6달러(한화 약 264만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가공식품 소비액이 신선식품 대비 약 1.5배 수준임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815.3달러(한화 약 107만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40.4% 차지함
 - * 신선식품 중에서는 채소류와 낙농품 소비액이 각각 244.2달러(한화 약 32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1인당 연간 1,202.3달러(한화 약 158만원) 규모로 식품 지출의 59.6% 차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 411.0달러(한화 약 54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뒤이어 스낵류 226.7달러(한화 약 30만원), 편의식품 226.1달러(한화 약 30만원) 수준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672.8	1,660.3	1,780.3	1,940.0	2,017.6	100.0	4.0
신선식품	664.8	663.1	708.7	776.5	815.3	40.4	5.0
- 채소류	204.7	203.0	215.5	234.7	244.2	12.1	4.0
- 낙농품	197.2	196.4	209.7	229.5	244.2	12.1	6.4
- 과일 및 견과류	146.3	145.1	153.9	167.6	174.2	8.6	3.9
- 육류	85.3	87.7	97.0	109.3	118.8	5.9	8.7
- 유지류	31.3	30.9	32.6	35.4	33.9	1.7	-4.2
가공식품	1,008.0	997.2	1,071.6	1,163.5	1,202.3	59.6	3.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52.3	348.3	368.5	400.2	411.0	20.4	2.7
- 스낵류	182.0	178.5	203.1	220.0	226.7	11.2	3.0
- 편의식품	183.1	182.9	195.6	214.6	226.1	11.2	5.4
- 스프레드 및 당류	189.4	185.9	196.6	214.0	218.7	10.8	2.2
- 소스 및 향신료	57.4	56.7	60.0	65.1	68.0	3.4	4.5
- 펫푸드	25.5	26.3	28.3	28.9	30.1	1.5	4.2
- 영유아용 식품	18.3	18.6	19.5	20.7	21.7	1.1	4.8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유지류를 제외하고 전 품목 모두 상승세를 보임
- 2022년 신선식품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낙농품, 채소류, 과일 및 견과류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낙농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20.0kg이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육류가 7.9%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됨
- 2022년 가공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스프레드 및 당류, 스낵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4.0kg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2.9% 증가함
 - * 가공식품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품목은 편의식품으로 5.3% 증가함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낙농품	95.6	95.2	102.3	112.8	120.0	6.4
	- 채소류	92.2	88.8	93.2	99.0	102.7	3.7
	- 과일 및 견과류	54.3	53.1	55.9	60.5	62.5	3.3
	- 육류	8.9	9.1	10.1	11.4	12.3	7.9
	- 유지류	6.1	6.0	6.3	6.8	6.4	-5.9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1.7	166.3	175.7	188.6	194.0	2.9
	- 스프레드 및 당류	83.5	82.4	88.1	96.6	97.4	0.8
	- 스낵류	33.2	32.7	34.5	37.0	38.1	3.0
	- 편의식품	29.3	28.8	30.9	33.7	35.5	5.3
	- 소스 및 향신료	15.5	15.1	16.0	17.4	18.1	4.0
	- 펫푸드	12.5	12.6	13.5	13.8	14.2	2.9
	- 영유아용 식품	1.1	1.1	1.1	1.2	1.2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농식품 수출규모 38억 1,784만 8,000달러(한화 약 5조 14억 원)로 전년 대비 12.7% 감소하였으며, 5개년 연평균 0.3% 상승함
 -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크며(20.4%), 뒤이어 중국(13.5%), 홍콩(11.0%), 일본(10.2%)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고 한국은 수출 상위 7위 국가임
 - * 對미국 수출액 7억 7,770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188억 원)로, 전년 대비 0.2% 증가함
 - * 對중국 수출액은 5억 1,531만 3,000달러(한화 약 6,751억 원), 對홍콩 수출액은 4억 2,036만 5,000달러(5,507억 원)이며 모두 전년 대비 수출액이 감소함
 - * 對한국 수출규모는 약 1억 8,022억 5,000달러(한화 약 2,361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4.7%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1.7%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3,765,044	3,909,922	3,747,019	4,371,328	3,817,848	100.0	-12.7	0.3
1 미국	442,358	496,113	565,810	776,283	777,707	20.4	0.2	15.1
2 중국	959,963	1,084,781	956,287	963,987	515,313	13.5	-46.5	-14.4
3 홍콩	385,883	337,156	359,187	435,816	420,365	11.0	-3.5	2.2
4 일본	366,111	434,219	360,323	413,503	389,536	10.2	-5.8	1.6
5 호주	80,771	86,549	111,246	255,901	254,227	6.7	-0.7	33.2
6 베트남	456,003	336,151	239,826	247,228	182,593	4.8	-26.1	-20.5
7 한국	241,972	228,029	221,997	161,288	180,225	4.7	11.7	-7.1
8 싱가포르	92,275	97,907	125,683	119,241	130,610	3.4	9.5	9.1
9 말레이시아	109,815	124,679	108,022	140,178	127,957	3.4	-8.7	3.9
10 필리핀	69,783	84,259	76,767	96,366	122,456	3.2	27.1	15.1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 중 조제식료품의 수출 비중이 20.2%로 가장 크며, 그 외 품목의 수출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임

* 조제식료품의 수출규모가 7억 7,239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118억 원)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3%의 성장세를 보임

* 그 외 식품류에서는 빵 기타 제품(4.9%)과 음료 기타(4.4%)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3,765,044	3,909,922	3,747,019	4,371,328	3,817,848	100.0	-12.7	0.3
1 조제식료품	604,534	700,475	679,984	828,644	772,395	20.2	-6.8	6.3
2 빵 기타	155,442	158,163	161,939	192,043	185,177	4.9	-3.6	4.5
3 음료 기타	169,700	173,134	179,435	201,659	169,210	4.4	-16.1	-0.1
4 타피오카	54,066	127,552	81,188	100,068	100,639	2.6	0.6	16.8
5 파스타 기타	83,205	79,328	98,019	86,572	79,619	2.1	-8	-1.1
6 쌀(정미)	29,428	48,489	108,782	100,744	79,261	2.1	-21.3	28.1
7 냉동 채소 기타	79,323	83,172	79,610	77,907	77,095	2.0	-1.0	-0.7
8 위스키류	44,199	37,632	42,558	102,884	61,167	1.6	-40.5	8.5
9 증류주 기타	47,889	75,617	95,302	91,609	59,169	1.5	-35.4	5.4
10 동·식물성 유지	37,269	34,795	45,614	52,011	56,228	1.5	8.1	10.8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농식품 수입규모는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7.3%의 증가세를 보임

- 2022년 농식품 수입규모는 171억 9,222만 5,000달러(한화 약 22조 5,218억 원)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함

- 미국산 농식품의 수입 비중이 26.7%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2.4% 수입 비중으로 14위 수입국임

* 2022년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약 45억 8,224만 6,000달러(한화 약 6조 27억 원)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함

* 뒤이어 브라질(7.4%), 뉴질랜드(5.7%), 중국(5.3%) 등이 수입 상위국임

* 2022년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약 4억 1,341만 8,000달러(한화 약 5,416억 원)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9%의 성장률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963,527	12,946,064	12,690,189	15,048,329	17,192,225	100.0	14.2	7.3
1 미국	4,221,308	3,751,031	3,398,761	3,893,948	4,582,246	26.7	17.7	2.1
2 브라질	370,141	925,619	999,136	1,203,769	1,275,167	7.4	5.9	36.2
3 뉴질랜드	772,690	733,738	769,798	843,686	972,535	5.7	15.3	5.9
4 중국	808,576	798,658	819,770	852,407	906,517	5.3	6.3	2.9
5 호주	685,884	615,871	586,131	755,616	900,595	5.2	19.2	7.0
6 일본	683,947	670,942	720,024	862,811	885,206	5.1	2.6	6.7
7 태국	689,654	591,654	538,775	620,186	730,545	4.2	17.8	1.5
8 아르헨티나	72,213	159,902	225,136	413,133	606,423	3.5	46.8	70.2
9 영국	500,068	585,174	487,627	567,533	579,092	3.4	2.0	3.7
10 말레이시아	308,763	289,391	324,942	411,928	532,478	3.1	29.3	14.6
14 한국	283,865	304,880	306,022	374,900	413,418	2.4	10.3	9.9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대두 기타(10.8%), 옥수수 기타(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외)(10.1%), 조제식료품(5.0%) 순이며, 이외 쇠고기 및 주류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음

* 대두 기타의 수입액은 18억 5,930만 5,000달러(한화 약 2조 4,357억 원)이며, 전년 대비 24.3%로 증가함

* 옥수수 기타(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외)의 수입액은 약 17억 4,181만 3,000달러(한화 약 2조 2,818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1.7%의 큰 증가율을 보임

* 조제식료품 수입액은 약 8억 5,900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1,253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8.7% 증가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963,527	12,946,064	12,690,189	15,048,329	17,192,225	100.0	14.2	7.3
1 대두 기타	1,070,302	1,026,947	1,039,160	1,496,382	1,859,305	10.8	24.3	14.8
2 옥수수 기타	854,314	978,340	886,651	1,322,338	1,741,813	10.1	31.7	19.5
3 조제식료품	669,946	688,011	674,757	790,111	859,004	5.0	8.7	6.4
4 냉동 쇠고기	561,916	608,553	608,930	619,319	820,881	4.8	32.5	9.9
5 위스키류	482,538	554,300	463,230	554,092	564,865	3.3	1.9	4.0
6 신선 냉장 쇠고기	386,120	372,248	423,205	533,228	542,253	3.2	1.7	8.9
7 밀 기타	317,376	311,931	349,519	376,125	523,152	3.0	39.1	13.3
8 팜유 기타	155,728	130,777	156,412	240,622	317,277	1.8	31.9	19.5
9 절단한 냉동 닭고기	213,436	197,911	229,158	168,791	271,996	1.6	61.1	6.2
10 냉장 돼지고기	211,447	220,453	174,846	187,601	260,562	1.5	38.9	5.4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한국의 對대만 농식품 수출현황

- 2018년 이후 5년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對대만 수출규모는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보임
 - 2022년 농식품 수출량은 4억 1,879만 7,000달러(한화 약 5,486억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동등한 수준이며, 3억 2,089만 6,000달러(한화 약 4,204억 원)로 전체 수출 비중의 76.6%를 차지함
 -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6% 증가한 1,920만 1,000달러(한화 약 252억 원), 임산물은 7,870만 달러(한화 약 1,031억 원)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3%의 증가세를 보임

한국의 對대만 수출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312,067	309,699	301,506	402,657	418,797	100.0	4.0	7.6
농산물	241,986	258,388	259,432	318,942	320,896	76.6	0.6	7.3
축산물	6,009	6,060	7,645	13,657	19,201	4.6	40.6	33.7
임산물	64,072	45,251	34,429	70,058	78,700	18.8	12.3	5.3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대만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신선 배, 조제식료품 기타, 건조 김, 조미 김 등으로 집계됨

* 2022년 對대만 라면 제품 수출액은 3,045만 4,000달러(한화 약 399억 원)로 전년 대비 4.2% 감소함

* 신선 배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8% 감소한 2,118만 5,000달러(한화 약 278억 원)임

한국의 對대만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312,067	309,699	301,506	402,657	418,797	100.0	4.0	7.6
1 라면	20,192	19,924	23,573	31,801	30,454	6.3	-4.2	10.8
2 신선 배	21,281	26,610	26,676	27,806	21,185	4.4	-23.8	-0.1
3 조제식료품 기타	26,611	25,716	23,307	23,707	20,973	4.3	-11.5	-5.8
4 건조 김	22,056	18,137	16,941	14,402	16,409	3.4	13.9	-7.1
5 조미 김	-	3,096	9,521	13,405	14,400	3	7.4	-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수입자 등록	식품 수입 전 대만 관세청에 기업 정보 등록 필요	대만 수입업체
수입신고	- 도착 후 15일 이내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④ 운송서류 ⑤ 원산지증명서 ⑥ 위생증명서 등	대만 수입업체
수입검사	- 대만 도착 15일 전 'Trade Van 시스템'을 통해 입국항의 검사기관에 수입검사 신청 필요 - 수입신고 시 제출한 서류 내용에 따라 통관채널 구분 - 통관채널 : ① 서류원본검사 및 화물검사 면제 ② 서류원본검사 ③ 서류원본검사 및 화물검사 - 화물검사 : ① 배치 검사 ② 무작위 배치 검사 ③ 강화된 무작위 배치 검사 - 그 외 검사 : ① 인증서 검사 ② 감독 검사 - 검사 합격 시 식품수입허가증 발급	대만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납부고지서 발급 후 14일 이내 관세 납부 -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대만 수입업체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대만은 특정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 시행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파 △마늘 △표고버섯 등의 특정 품목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의무 제출 제도를 운영함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원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대만은 대만 당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검역 신청 필요 - 대만으로 △사과 △배 △복숭아 등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대만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대만 수입통관 제도

개요	● 통관 업무 담당 기관은 재정부(財政部, Ministry of Finance, R.O.C)이며, 관무서(關務署, Customs of Administration)에서 관세 제도를 담당하고 있음	
	- 관무서는 수입품 관세 부과, 통관 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 단속, 보세구역 관리, 무역통계 등 업무 담당으로 타이베이(台北)·지룽(基隆)·타이중(台中)·가오슝(高雄) 등 4개의 세관을 관리하며, 각 세관 산하 10개 분국(分局)·지국(支局)으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함	
	- 법률체계는 관세법(關稅法)을 따르며, 관세법은 1967년 8월 8일 58개 조항을 시작으로 현재 103개 조항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2018년 5월 9일 개정. 총 7장으로 구성됨	
	- 대만은 자체적으로 숫자 11자리의 CCC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 6자리는 HS Code와 동일함	

▶ 대만 수입통관·검역 절차

수입자 등록

- 식품 수입 전 대만 수입업체는 대만 관세청에 기업 정보 등록 필수
 - 수입자는 직접 수입하지 않고 수입 위탁업체(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는 세관으로부터 등록된 업체여야 함

수입신고

대만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또는 견적송장(상업송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③ 포장명세서
④ 항공화물운송장, 화물인도지시서 등 운송서류
⑤ 원산지증명서
⑥ 위생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수입검사

- 대만 수입업체는 도착 15일 전에 입국항의 검시 기관에 수입검사 신청 필요
 - 대만 수입업체는 수입검사 신청 시 'Trade Van' 사이트를 통해 △검사신청서 △제품 정보 신고서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등 기타 중앙위생당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선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만 수입업체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검역증명서를 토대로 수입식품의 유형을 구분해 검역을 시행함

대만 신선 농산물 검역 유형

① 특별검역 조건이 없는 제품
② 검역 조건이 있는 제품
③ 격리 검역 필요제품
④ 수입금지제품

- 수입신고 진행 후 서류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대만 관세청의 자동선별 시스템에 따라 수입화물을 하기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이를 수입자에게 통보함

대만 통관채널별 수입검사 유형

① C1 : 서류원본검사 및 화물검사 면제 대상
② C2 : 서류원본검사 대상
③ C3 : 서류원본검사 및 화물검사 대상

- 대만은 수입식품에 대해 ① 배치별 검사(Batch-by-batch inspection) ② 무작위 배치 검사(Regular Randomly-selected batch inspection) ③ 강화 무작위 배치 검사(Reinforced Randomly-selected batch inspection) ④ 인증서 검사(Certification inspection) ⑤ 감독 검사(Overseas inspection) 등을 진행

-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주로 배치별 검사와 무작위 배치 검사가 진행됨

대만 수입식품 검사 유형

배치 검사	- 전량 검사 진행 - 제출된 각각의 배치에 대해 현장 검증 및 샘플 분석 진행 -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증명되었거나, '수입물품에 대한 TFDA 연간 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진행됨
무작위 배치 검사	2~10% 비율로 배치 검사가 이루어지며, 선별된 배치에 대해 현장 검증 및 샘플 분석이 이루어짐 - 배치별 검사, 강화 무작위 배치 검사, 인증서 및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닌 물품
강화된 무작위 배치 검사	20~50% 비율로 배치 검사가 이루어지며, 선별된 배치에 대해 현장 검증 및 샘플 분석이 이루어짐 -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증명되었거나, '수입물품에 대한 TFDA 연간 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진행됨
인증서 검사	대만과 수출국의 위생·안전 당국 간 협약에 따라 등록된 우수 산업(Excellent Industry)에 대하여는 인증서 검사를 진행함
감독 검사	검사기관은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특정 물품에 대해 감독 검사를 채택할 수 있음

- 대만 위생복지부 산하 식품 의약품관리서는 검역 합격 시 식품 수입허가증을 발급함

- 대만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수출 전 사전 확인이 요구됨

수입검사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관세는 수입 신고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제외)에 납부

- 납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즉시 납부, 사후 납부, 담보 제공 등으로 분류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대만 관세 납부 방식

① 즉시 납부	• 일반적인 납부 형태로, 수입화물이 반출되기 전에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함
② 사후 납부	•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 산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을 반출하고 이후 관세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함
③ 담보 제공	• 수입 화물 반출 전에 확정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수입 화물 개별 혹은 월 단위의 포괄 관세액을 납부함

- 관세 기준은 세계무역조직위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대만 우혜국, 개발도상국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함

대만 관세 기준

① 제1란(Column I)	• 해당 세율은 세계무역조직위원 또는 대만 우혜국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 기준을 적용함 • 대한민국과 중국을 포함한 163개 WTO 회원국과 대만의 상호호혜국인 29개국에 적용함
② 제2란(Column II)	• 해당 세율은 특정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 대만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 기준을 적용함 • 파나마, 과테말라 등 대만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저개발국에 적용함
③ 제3란(Column III)	• 해당 세율은 제1란과 제2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 기준을 적용함

FTA 체결현황

대만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파나마, 과테말라, ECFA, 니카라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온드라스·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마셜제도, 에스와티니, 벨리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 보리, 밀, 수수, 대두, 팥, 녹두, 옥수수 등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유자, 밤, 사과, 배, 복숭아, 참다래 등
 - * 대만 측의 금지 병해충인 Satsuma dwarf virus와 관련하여 감귤 품목은 과실에 생경엽 및 줄기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됨
 - * 사과, 배, 복숭아, 참다래는 대만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 과실류는 수출 가능 품목이더라도 휴대 수출은 불가하며, 우편/특송 화물로 수출 가능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Cucurbita moschata),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마늘, 파슬리, 아스파라거스 등
 - * 채소류는 수출 가능 품목이라 하더라도 휴대 수출은 불가하고 우편/특송화물로는 수출 가능
- 특작류 : 인삼(수삼, 휴대는 6kg까지 허용하며 부기사항 기재된 검역증 첨부 필수), 건인삼(휴대는 6kg까지 허용, 검역증 불필요)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등
 - * 박과류 종자는 생육중 재배지검사 및 위생중에 과실썩음병(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증명을 해야함
 - * 가지속(Solanum spp.), 고추속(Capsicum spp.) 종자는 수출 전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3종) 및 바이로이드(6종) 무감염 증명을 해야 함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종균포함),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아귀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난초, 국화,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다육식물 일부(에케베리아속, 에오니움속, 아드로미슈스속)
 - * 난과(Orchidaceae) 재식용(종자 제외) 식물체는 현장 검역 또는 수출 전 실험실 검사를 통해 Orchid fleck virus 미감염을 증명해야 함
- 묘목류 : 철쭉묘, 소나무묘(해송, 적송)
 - * 유리알락하늘소의 기주식물은 꽃·과실 종자, 직경 3cm 이하의 새싹·어린가지 및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이 3cm 이하인 묘목의 경우에만 수출 가능함(단풍 나무속, 느릅나무속, 뽕나무속, 뽕나무속, 뽕나무속, 사과나무속, 오리나무속, 자작나무속, 장미속, 철쭉나무속 등)
 - * 대만 검역당국은 자국으로 수입가능한 품목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http://www.baphiq.gov.tw>)

- 축산물
 - 멸균 돈육가공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유제품, 젤라틴 및 파생제품, 삼계탕, 오징어 간파우더, 반려동물 사료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조
 - 과실류 : 대추, 매실, 살구, 아몬드, 자두, 블루베리 등
 - 채소류 : 감자
 - 목류 : 굴속·금굴속·탱자나무속, 직경 3cm를 초과하는 유리알락 하늘소의 기주식물 등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orea Shop(대만)
업체 유형	한국 제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Ms.Safee(CEO)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산 수입 과일은 배와 딸기이며 특히 신고배와 화산배가 유명함
 - 가공식품 중에서 한국산 라면과 주류를 수입하고 있음.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집에서 식사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라면 및 냉동식품의 수요가 증가함
 - 인삼 및 인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많은 브랜드에서 한국 고려인삼을 수입하고 있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대만은 수입 절차와 성분 심사가 엄격해 많은 한국 제품이 대만으로 성공적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음
 - 대만에서 신선식품을 수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잔류농약임. 한국 신선식품은 잔류농약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특히 올해 포도, 멜론, 배 등의 잔류농약 성분 문제로 인해 한국산 과일 수입에 차질이 있었음
 - 한국산 육류나 계란 등 축산물 수입을 희망하지만 엄격한 수입 규정 탓에 수입이 어려움
- 최근 현지에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안전문제 등 이슈사항
 - 고기가 포함된 스프가 들어있는 수입 라면류에서 잔류농약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무작위 검역 검사를 강화하였고, 한국산 라면 제품에서도 해당 성분이 검출되어 문제 되었던 일이 있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17개의 특정 CCC코드로 분류되는 식품 또는 식품 관련 용도 제품(예, 식기류, 식품 용기 또는 포장재, 식품 세척제 등)의 수입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경우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역규정’을 따라야 하며, 수입업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함
 - 대만은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버섯류 8개를 포함 총 13개 특정 식품을 지정한다고 2022년 2월 WTO에 통보함
 - 한국산 식용 기타인삼뿌리 품목은 6개월간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불합격 사례가 3건이 발생되어, 해당 품목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고함
 - 대만 식품의약국은 2022년 12월 ‘2023년 육류가공식품 제조업 감독·검사’ 시행을 발표함
- 대만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대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 화물 및 우편물에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식품안전 및 위생 증명서 첨부이 요구되는 수입 식품의 경우, 증명서 사본을 허용함.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식물 지정검역품목 수입 승인규정”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함. 지정검역품목 수입 시 식물검역당국의 수입허가증을 첨부해야 하며, 해당 식품 수입 신청 시 필요한 수입업체의 제출 서류가 개정됨
- 대만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표준 개정을 통해 영유아 식품에 포함되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의 최고 한도를 조정함
- 대만은 한국산 농산물 중 일부 품목을 수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새로운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협의와 대만 검역당국의 수입위험분석(PRA) 등을 거쳐 시장접근 승인을 받아야 함
- 대만은 식품의 통관기준이 까다롭고 잔류농약성분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그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대만 위생복지부는 2023년 7월 1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통보했는데 주요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를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다수 포함됨
 - 해당 기준에서 품목별 허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어선 안 됨

* '23년 대만에서 통관 거부된 한국산 주요 문제 품목 및 대만의 농약성분 검출 기준

① 신선 배추 : 피리벤카드 불검출, ② 면류 : 에틸렌옥사이드 불검출(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과 합산 적용),

③ 배(기타 채소 및 과일) : 부틸메트로렌 0.01mg/kg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대만 FDA(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식품 첨가물 허용치	대만 FDA(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aspx?nodeID=521&rand=1331586775
미생물 규정	대만 FDA(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776

통보문 개정현황(2023년)

• 육류가공식품의 라벨 및 위생검사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TFDA)은 2022년 12월 '2023년 육류가공식품 제조업 감독·검사 (肉類加工食品製造業稽查專案)' 시행을 발표 - 해당 검사는 GHP(우수위생관리기준)와 HACCP(위해요소 집중관리기준)의 적합성 확인 및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에 중점 - 육류가공식품 제조업 감독·검사 주요 내용 - 돼지/소고기 원료의 원산지 표시(라벨)검사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를 위한 원료육의 샘플 검사 강화 - 식품 내 아질산염 및 미생물 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위해 육류 가공품에 대한 샘플 검사 강화 - 기업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과정 및 환경, 개인위생 등에 대한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함 - 해당 검사에서 GHP 및 HACCP이 누락되어 불합격하거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6만 대만달러~2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육류 품목은 삼계탕 등 제한적임 - 해당 검사는 시판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만으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삼계탕 제품 또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대만으로 삼계탕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3년부터 강화되는 육류가공식품 검사 기준을 확인하고, 특히 GHP 및 HACCP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와 대만의 위생 기준에 주의해야 함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Id=NTB0203638

● 농약성분 잔류 허용기준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은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6월 3일까지(수입일 기준)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용 기타 인삼뿌리'(신선 인삼) 품목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고함 • 한국에서 수입된 「1211.20.90.00-0A(수입코드) 식용 기타인삼뿌리」품목은 6개월간 불합격 사례가 3건이 발생되어 해당 품목 수입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 - 3건 모두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반품또는 폐기되었음 - 검출성분은 메트코나졸, 파라클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플루디옥소닐, 디페노코나졸 등임 •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은 식품업자는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토록하고 있음 - 식품위생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품 판매 중단, 회수 및 지방 중앙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법령 47조에 의해 벌금이 부과됨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021&board=ntbVievw&boardid=NTB0183960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주요 변동사항(2023년)

● 식품첨가물 '2'-fucosyllactose(2'-FL)' 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2'-fucosyllactose (2'-FL)	영아용 조제유	(-)	1.2g/L
시행일	2023년 6월 8일		
관련 규정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법 제 15-1조 2항과 22조에 따라 제 1항 제 10호에 규정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2. TBT⁴⁾

주요 TBT 내용

- 식품 라벨링과 관련한 주요 규정 및 개정 사항(2023년)
 -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정”의 변경 내용
 - * 2022년 6월, 타이완, 평후, 킨먼 및 마추 개별관세영역은 영양 강조 표시의 정의, 아미노산 단위의 일관성, 칼로리 및 영양가를 ‘0’으로 표시하기 위한 조건, 열량 및 영양소의 실제 함량에 대한 표시, 데이터 표시 형식 수정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 2023년 8월 “보충 섭취를 위한 영양소” 관련 부분, 두 가지 이상의 영양 강조 표시가 있는 액상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식품에 대해 선언할 수 없는 강조 표시 등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안이 발표됨
 - 건강식품의 라벨링 규정이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통보함. 이에 따라, 건강식품은 건강 영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특정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의 필요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2022년 3월 “식품 원료 알로에의 사용 제한 및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을 통보함
 - 2023년 2월 “영아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라벨링 규제에 관한 라벨 규정”을 공포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시행됨을 통보함
 - 2023년 계란 흰자 리소자임 가수분해물,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씨앗 추출물, 유전자 변형 *Saccharomyces cerevisiae* 균주 EFSC4687에 의해 생산된 트랜스레스베라트룰, 식품용 곰보버섯(*Morchella esculenta*) 액상 균사체 배양 분말 등 4가지 성분의 사용 제한 및 라벨링 표기 요건을 제정하고 시행함
- “폴리염화비닐(PVC)이 함유된 판형 포장재, 재활용 지정 용기 및 비-판형 일회용 식품 용기의 생산,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제한”이 2022년 4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됨을 통보함
- 식품 등록 및 허가 관련 주요 개정 사항(2023년)
 - 2022년 9월, “식품 및 관련 제품 허가서류 심사, 등록 및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공포됨. 개정안은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등록 및 검토 관행에 따른 요건 개정, 식품첨가물 등록에 대한 추가 요건을 수정함
 -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건강식품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에서 온라인 등록 방식 추가, 건강식품 허가 규칙의 개정, 기존의 심사등록표준 통합 등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4)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대만 FDA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7
SGS 인증	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https://www.sgs.com/#nav-main-dropdown-2016

주요 품목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용량 • 원산지	• 영양성분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제조사 및 수입사 정보 • 식품첨가물 • 알레르기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모든 필수정보는 중문으로 표기해야 함(외국어는 보조적 용도)		
	제품명	• 식품 원료성분 · 원료품종 · 식용부위 · 생산지 · 숙어 등을 이용해 명기해야 함		
		• 상품의 영문명이 'SLIM TABLET'과 같이 신체 외형을 나타내는 경우 영문명만 사용하고 중문 직역을 명기해서는 안 됨		
		• 일반 식품의 품명으로 '건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성분	• 식품에 포함된 재료가 2종 이상 혼합된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표기하며 주성분과 부성분 등 성분을 나뉘 작성하지 않음		
		• 표기 가능한 내용물의 명칭은 식용 가능 원료 어휘 정리 일람(可供食品使用原料彙整一覽表)을 참고해 작성해야 함		
		• 식품 첨가물 명은 식품 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규격 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規格標準)에 따라 사회에서 통용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용량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중량 · 용량 · 수량을 미터법에 따라 명시		
		• 액체가 고형물과 함께 든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고형량을 별도로 표기해야 하나, 표기가 어려울 경우 내용물의 중량만 표기해도 무방함		
		• 내용물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작성해야 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모든 필수정보는 중문으로 표기해야 함(외국어는 보조적 용도)
	제품명	식품 원료성분 · 원료품종 · 식용부위 · 생산지 · 속어 등을 이용해 명기해야 함
		상품의 영문명이 'SLIM TABLET'과 같이 신체 외형을 나타내는 경우 영문명만 사용하고 중문 직역을 명기해서는 안 됨
		일반 식품의 품명으로 '건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성분	식품에 포함된 재료가 2종 이상 혼합된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표기하며 주성분과 부성분 등 성분을 나눠 작성하지 않음
		표기 가능한 내용물의 명칭은 식용 가능 원료 어휘 정리 일람(可供食品使用原料彙整一覽表)을 참고해 작성해야 함
		식품 첨가물 명은 식품 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규격 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規格標準)에 따라 사회에서 통용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용량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중량 · 용량 · 수량을 미터법에 따라 명시
		액체가 고형물과 함께 든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고형량을 별도로 표기해야 하나, 표기가 어려울 경우 내용물의 중량만 표기해도 무방함
		내용물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작성해야 함
	원산지	2개 국가 이상의 제품을 혼합해 포장했을 경우 제품의 함량이 많은 국가명 순으로 명기해야 함
		수입산 원료이나 대만에서 재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 경우 원산지는 대만으로 명시해야 함
		식품 제조사 주소에 원산지를 명시했을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를 생략해도 무방함
	유통기한	유통기한 포장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년 · 월 · 일을 포함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액체 상태의 유제품은 보존 기간과 보존 조건을 모두 표기해야 함
		수입 제품의 경우 대만의 민국(民國)표기 표기와 양력(西元)을 구분해 표기해야 함
	제조사 및 수입자 정보	수입신고 시 세관에 신고한 내용 및 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히 명기해야 함
		수입식품의 경우 대만 내 수입 위탁기업의 정보를 명기해야 하며, 기업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해야 함
	영양성분	식품의 영양성분표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포장 외부에 명시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순서대로 나타내야 함
		영양 라벨링에서 열량 및 영양소를 0으로 표기하는 조건은 식품안전위생 관리법에 따름
		이외에 업자가 표기하기 원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등을 포함해도 무방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식품첨가물	• 2가지 이상 원료를 혼합한 식품첨가물은 용도를 제시해야 하며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표기해야 함
	알레르기 성분	• 식품 알레르기 정보 필수 표기 대상(11종) : 갑각류(새우, 게 등), 망고, 땅콩, 우유 및 산양유, 알류, 견과류, 깨 •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류 또는 이산화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인 제품
		• 권장 표기 품목(4종) : 오징어 및 기타 두족류, 달팽이 및 기타 조개류, 해바라기씨 및 기타 씨앗류, 키위
		•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처리하는 경우 표기 권장
	기타	• 대만 건강식품 인증마크 취득제품 외 일반 식품 ‘건강’ 단어 표기 제한
		• 재수화가능 식품 또는 희석 후 식용 식품의 영양성분은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와 ‘보충 섭취 가능 영양소’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함
		• 라벨링 규정 라벨링 규정 위반 시, 정해진 기한 내 제품을 회수해 수정해야 하며, 수정한 사항이 관리기관에 합격하기 전까지 시판이 금지됨 • 벌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벌크 식품 표시 관련 규정(散裝食品標示相關規定)’에 따라 품명, 원산지, 소고기 원료 원산지,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 여부 등 사항을 표기해야 판매 가능함

* 자료 :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국(TFDA)

• 홍삼가공품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품명	퀘이커					
원재료명(원료원산지명)/첨가물	인삼농축액(물, 화가삼, 인삼, 연꽃씨, 백합), 흑설탕, 흑설탕, 이소말토올리고당, 트레할로스, 코엔자임Q10(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코엔자임Q10), L-글루코스 아미노산, 테오브로마씨추출물(코코아 폴리페놀 함유), 니코틴, 비타민 B12,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 엽산, 판다네이트 칼슘, 비오틴					
내용량	15ml x 16팩					
보존방법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유통기한	2년					
제조사	퀘이커 푸드(Quaker Foods, Inc.)					
제조지(원산지)	대만					
카페인 함량	20mg/100ml 미만					
주의사항	- 15세 미만 어린이,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섭취하지 말 것 - 하루 1포 섭취를 권장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					
영양성분	- 1회 제공량 15ml - 총 16회 제공					
	구분	1회	100ml 당	구분	1회	100ml 당
	열량	16.5kcal	109.4kcal	비타민B1	0.1g	0.4mg
	단백질	0.4g	2.7g	비타민B2	0.9g	6.1mg
	지방	0.1g	0.6g	비타민B6	1.2g	7.8mg
	포화지방	0g	0g	비타민B12	0.1g	0.5μg
	트랜스지방	0g	0g	니코틴	4.8mgNE	32mgNE
	탄수화물	3.4g	23.3g	판토텐산	0.1mg	0.9mg
	설탕	2.7g	18g	엽산	0.8μg	5μg
	나트륨	3mg	20mg	비오틴	21.6μg	144μg
				아르기닌	80mg	533mg

● 곡물가루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32종 곡물가루		
원재료명	대두(비유전자개조),D-솔비톨(감미료), 흑임자, 귀리, 검은콩, 효자쌀, 흑찰현미, 홍두, 보리인, 밀가루, 메밀, 탄산칼슘, 관화도포, 녹두, 피칸, 밀초아, 홍설당, 쌀참쌀, 참쌀, 청완두, 연자, 아몬드, 마, 녹차, 옥수수(비유전자개조), 홍초가루 (홍초농축액, 밀가루), 국화, 구기자 가루(구기자농축액, 밀가루, 부루포, 진주, 은행, 연잎, 인삼, 표고버섯가루		
내용량	25g x 12봉		
보존기한	24개월(제품 개봉구에 표시)		
보관방법	그늘진 서늘하고 건조한 곳 보관		
제조사	마옥산		
제조지(원산지)	대만		
영양성분표시(100g당)	1회 제공량 25g총 12회분		
	칼로리	106kcal	5%
	단백질	5.8g	10%
	지방	2.7g	5%
	포화 지방	0.4g	2%
	트랜스 지방	0g	-
	탄수화물	14.7g	5%
	당	1.6g	-
	식이섬유	1.5g	6%
	나트륨	14mg	1%
	칼슘	90mg	8%
알레르기 주의 성분	대두, 참깨, 귀리, 보리알, 밀, 메밀, 밀초아, 검은콩, 아몬드, 옥수수, 은행		

인증

[필수 인증]

• 식품의약품인증

- 대만에 특정 식품(유전자 변형 식품,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진공포장식품, 특수 식이식품(분유 등), 캡슐 또는 정제된 일반식품 등) 수출 시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TFDA)에서 요구하는 주요 규정을 준수해야 함.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신규 식품(Novel foods)의 제조, 가공, 조리,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선물, 전시가 금지됨

인증명	식품의약품(TFDA)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강제유무	필수(수입업체)	
제출 서류	신청서, 안전성평가 보고서, 기능성평가 보고서, 원료의 안전성 보고, 제조공정 요약, GMP 증거 서류, 제품위생관련 사항 및 검사 보고서 등	
비용	예비 심사 시 80,000대만 달러(한화 약 313만 원), 2차 심사 시 170,000대만 달러(한화 약 666만 원)	
소요기간	약 2~22개월(식품 유형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제출 → 예비 심사 → 샘플 제출 → 2차 심사 → 인증발급	

[선택 인증]

• 보건식품인증(건강기능식품인증)

- 해당 식품이 보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임. 인증마크 취득제품 이외에 제품명에 '건강' 표시 사용이 규제되며, 위반 시 최고 4,000,000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인증명	보건식품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신청서, 제품 원료 성분 규격 함량, 안전 평가 보고서, 보건기능 평가 보고서, 영양성분 분석 보고서 등	
비용	개별심사(250,000대만 달러), 규격표준심사(80,000대만 달러)	
소요기간	개별심사(180일), 규격표준심사(12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만의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는 총 58건으로 집계됨. 사유별로는 3개년 모두 잔류농약 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21~2023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성분 부적합	3	8	4	15
위생	0	0	0	0
서류미비	0	0	0	0
잔류농약 검출	14	17	12	43
기타	0	0	0	0
합계	17	25	16	58

2023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3년 대만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총 16건으로 잔류농약 검출 12건, 성분 부적합 4건으로 집계되었음

2023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0	0	1	0	1	0	0	0	1	1	0	0	4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2	1	1	0	0	0	1	1	0	1	2	3	12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	1	2	0	1	0	1	1	1	2	2	3	16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부적합	감미료 사카린 검출	1
	소브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검출	1
	감미료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 검출	1
잔류농약 검출	하이드록시벤조산 검출	1
	플루페녹수론, 노발루론 검출	1
	산화에틸렌 검출	2
	피리벤카브 검출	1
	사이노피라펜 검출	1
	테트라닐리프롤 검출	4
	메트코나졸, 피라클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아이소페타미드 검출	1
	사이클라닐리프롤 검출	1
	클로르메캇 검출	1
합계		16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과실류	7	43.7	잔류농약 검출
	채소류	3	18.8	잔류농약 검출
	소스류	2	12.5	첨가물 사용 규정 부적합
	인삼류	1	6.3	잔류농약 검출
	면류	1	6.3	잔류농약 검출
	기타조제 농산품	1	6.3	잔류농약 검출
소 계		15	93.7	
수산물	해조류	1	6.3	감미료 사용량 초과
소 계		1	6.3	
총 합 계		16	100.0	

04

수출 애로사항

No.	제 목	수삼의 잔류 농약 기준치 강화에 따른 수삼 수출의 어려움	해당국가	대만																		
1			관련품목	수삼제품																		
			유형*	SPS																		
주요 내용	- 대만 보건복지부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에 따르면,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명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은 이전에 살충제로 사용되었던 환경에 잔류하는 화합물을 말함 - 수삼의 농약 성분에 따른 허용 기준치																					
	<table><tr><th>농약 성분</th><th>잔류 허용 기준치</th><th>비고</th></tr><tr><td>Azoxystrobin(아зок시스트로빈)</td><td>0.1ppm</td><td>살균제</td></tr><tr><td>Chlorothalonil(클로로탈로닐)</td><td>1.5ppm</td><td>살균제</td></tr><tr><td>Dimethomorph(디메토모르프)</td><td>0.9ppm</td><td>살균제</td></tr><tr><td>Fludioxonil(플루디옥소닐)</td><td>0.75ppm</td><td>살균제</td></tr><tr><td>Mandipropamid(만디프로파미드)</td><td>0.1ppm</td><td>살균제</td></tr></table>				농약 성분	잔류 허용 기준치	비고	Azoxystrobin(아зок시스트로빈)	0.1ppm	살균제	Chlorothalonil(클로로탈로닐)	1.5ppm	살균제	Dimethomorph(디메토모르프)	0.9ppm	살균제	Fludioxonil(플루디옥소닐)	0.75ppm	살균제	Mandipropamid(만디프로파미드)	0.1ppm	살균제
	농약 성분	잔류 허용 기준치	비고																			
	Azoxystrobin(아зок시스트로빈)	0.1ppm	살균제																			
	Chlorothalonil(클로로탈로닐)	1.5ppm	살균제																			
	Dimethomorph(디메토모르프)	0.9ppm	살균제																			
	Fludioxonil(플루디옥소닐)	0.75ppm	살균제																			
	Mandipropamid(만디프로파미드)	0.1ppm	살균제																			
	수삼의 외부 잔류물에 따른 허용 기준치																					
	<table><tr><th>외부 잔류물</th><th>잔류 허용 기준치</th></tr><tr><td>Chlordane(클로르단)</td><td>0.02ppm</td></tr></table>				외부 잔류물	잔류 허용 기준치	Chlordane(클로르단)	0.02ppm														
외부 잔류물	잔류 허용 기준치																					
Chlordane(클로르단)	0.02ppm																					
애로·건의 사항	잔류 농약 기준치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강화되어 수삼 수출이 중단됨																					
기타	※ 대만 《농약 잔류 허용 기준》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No.	제목	자몽종자추출물 첨가 식품 수출의 어려움	해당국가	대만
			관련품목	자몽종자추출물
			유형*	SPS
2				
	주요 내용	• 대만 보건복지부의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이름, 범위, 적용 및 제한은 표 1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성분의 경우, 사용되어선 안 됨 •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자몽종자추출물은 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이므로 검출되지 않아야 함		
	애로·건의 사항	• 천연 향균제로서 식품에 사용하는 '자몽종자추출물'이 대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원료로 수출 불가		
	기타	※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aspx?modelID=521&rand=1331586775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누룩발효음료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대만 식품 위생법 사전 검토

자문 내용

- 관세 분류

부류	내용물 명칭	HS CODE	관세율	비고
			WTO	
음료	누룩발효음료	2202999000	-	-
			-	

자문 결론

- 해당 제품은 상온 보관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검사를 진행해야 함

검사항목		비용(USD)	검사 소요시간	검사시 필요 샘플량
미생물	장내세균과	84	7	200ml
	살모넬라균	63		

- 대만식품위생법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 통관 시 현지 세관에서 샘플 채취 가능성이 있음. 대만 법규에 부합하도록 수입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할 것을 권고함
- 미생물 검사 이외에도, 라벨링 및 기타 다양한 통관 절차에 유의해야 하며 실제 식품 수출 시기에 규정의 변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